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1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3. 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3. 4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3. 29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지침에 의거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고, 장기간 미조정된 일부 수수료를 조정함과 아울러 관계 법령이 제정, 개정, 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여 대주민 행정 신뢰도 구축 및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고성군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정비(안 제3조, 별표 1,4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 재정확충을 위한 경상남도 2000년 세외수입 업무추진지침(2000.2.11)에 의한 자치단체별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장기간 미조정 되고, 요율이 낮은 종목부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 · 개정토록 되어 있어
- 관계법령 제 ·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수수료 관련 항목을 신설, 삭제, 인상, 조정함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

- 정보공개 수수료 등 신설부문과 인감증명 수수료 등 인상부문에 대하여 원가계산, 인근 시군형평성 등을 판단하여 군민부담을 고려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3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